

**JOHN CRANE SALES TERMS AND CONDITIONS**  
(Global)

**1. Definitions**

1.1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meaning set out below:

"**Affiliate**" means in relation to a party, an entity which is Controlled by, Controls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party, where "Control" means having the direct or indirect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company or other business entity, whether through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voting interest, or otherwise and with "Controlling" and "Controlled" being construed accordingly;

"**Buyer**" means the customer that purchases Goods and/or Services pursuant to an Order;

"**Buyer Delay**" means any delay by Buyer in performing any contractual obligations or any other circumstance for which Buyer is responsible, including, delays in attending testing (if required), taking delivery or arranging shipment or being available for receipt of Services;

"**Confidential Information**" has the meaning given to such term in Section 23(**Confidential Information**);

"**Contract**" means a contract formed between Seller and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ection 3 (**Contract Formation**);

"**Deliverables**" means, collectively, Goods and Services;

"**Goods**" means all components, spare parts, products, or materials of any kind, supplied by Seller under an Or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any intellectual property and/or proprietary rights, whether registered or unregistered, legal or beneficial, including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patents (including applications and rights to apply for patents), trade secrets, know-how, trade names, database rights, moral rights, designs, copyrights, mask works, publicity right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rights in confidentiality or confidence, whether developed, generated, or acquired by Seller before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an Order, or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of an Order;

"**Order**" means a written work order or purchase order for Deliverables submitted by the Buyer to the Seller (including through electronic generation) and accepted by the Seller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ller has provided to the Buyer a Quotation or Order acknowledgement);

"**Quotation**" means the written quotation, proposal or tender submitt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Deliverables;

"**Seller**" means the John Crane entity supplying Deliverables to the Buyer;

"**Services**" means all maintenance, repair, monitoring, advisory or other services, provided under the Order; and

"**Terms**" these standard Sales Terms and Conditions.

**제 1 조(정의)**

1.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사**"란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 당사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당사자와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지배"란 의결권의 50 퍼센트 이상의 소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회사 등 사업체의 경영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배하는"과 "지배받는"은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구매자**"란 그 주문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구매자 지체**"란 시연, 인도된 상품 등의 수령, 배송 준비 또는 서비스를 받을 준비의 지체 등 구매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는 제 23 조(**기밀 유지**)에 명시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이란 제 3 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의 내용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결과물**"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상품**"이란 주문에 따라 판매자가 공급하는 모든 구성 요소, 예비 부품, 제품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상표 및 서비스표, 특허(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권 포함), 영업 비밀, 노하우, 상호,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 의장, 저작권, 마스크워크, 퍼블리시티권, 기밀 정보 및 기밀 또는 신뢰에 대한 권리 등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법적·시제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및/또는 재산을 의미하며, 주문의 발효일 전후 또는 주문 이행 과정에서 판매자에 의해 개발, 생성 또는 취득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주문**"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출한 것으로서(전자적 생성을 통한 경우 포함), 판매자가 수락한(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견적서 또는 주문 확인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물에 대한 서면 작업 지시서 또는 구매 주문서를 의미합니다.

"**견적서**"란 결과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서면 견적서, 제안서 또는 입찰서를 의미합니다.

"**판매자**"란 구매자에게 결과물을 공급하는 John Crane 법인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란 주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유지보수, 수리, 모니터링, 자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약관**"은 이 '표준 판매 약관'을 의미합니다.

1.2. A reference to a statute or statutory provision is a reference to it as amended or re-enacted; a reference to a statute or statutory provision includes all subordinate legislation made under that statute or statutory provision.

1.3. Any words following the words "include", "in particular" or any similar expressions will be construed without limitation and accordingly will not limit the meaning of the words preceding them.

1.4.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se Terms is the binding version as between you and us. Any translation has been prepared for convenience only.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ambiguity or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se Terms and any translated versio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1.2.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는 일부 또는 전부 제·개정된 최신의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를 의미하며,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에는 해당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제정된 일체의 하위 법령이 포함됩니다.

1.3. "포함", "특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뒤에 기재된 모든 문언은 무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즉 그 앞에 오는 문언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본 약관의 영문본은 귀하와 당사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있는 버전입니다. 본 약관의 모든 번역본은 단지 편의를 위해서만 작성된 것입니다. 본 약관의 영문본과 번역본 사이에 의미·내용의 충돌, 모호함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2. Expiry of Quotations:**

Any Quotations given by the Seller will expire thirty (30) days from and including the date of issue, unless extended in writing by Seller, and will constitute an invitation to treat and not an offer.

**제 2 조(견적서의 효력 기간)**

판매자가 제공한 견적서는 판매자가 서면으로 그 효력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발행일을 포함하여 30 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며, 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됩니다.

<p><b>3. Contract Formation / Modifications:</b></p> <p>Seller is not obliged to accept Orders placed by Buyer. An Order shall be deemed accepted by Seller, and a Contract formed between Seller and Buyer subject to these Terms, on the earlier of:</p> <p>3.1. Seller issuing and delivering to Buyer written acknowledgement of the Order; OR  3.2. Seller commencing the manufacture or assembly of Goods; OR  3.3. Seller delivering Goods to Buyer; OR  3.4. Seller commencing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OR  3.5. Seller's acceptance of Buyer's payment or part payment for Deliverables.</p>	<p><b>제 3 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b></p> <p>판매자는 구매자에 의한 주문을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문은 판매자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본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p> <p>3.1. 판매자가 주문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3.2. 판매자가 상품의 제조 또는 조립을 시작하는 경우  3.3.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3.4.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경우  3.5. 판매자가 결과물에 대한 구매자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p>
<p><b>4. Buyer's Acceptance of these Terms.</b></p> <p>EACH ORDER IS SUBJECT TO THESE TERMS. BUYER'S ISSUANCE OF AN ORDER, ACCEPTANCE OF THE DELIVERY OF GOODS AND/OR RECEIPT OF SERVICES SHALL CONSTITUTE ACCEPTANCE OF THESE TERMS. THESE TERMS ARE THE ONLY TERMS AND CONDITIONS ON WHICH SELLER WILL PROVIDE DELIVERABLES, AND ANY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OR CONDITIONS PROPOSED OR IMPLIED BY BUYER (INCLUDING ANY BUYER TERMS AND CONDITIONS ON REQUESTS FOR QUOTATION, DELIVERY ACCEPTANCE NOTES, PURCHASE ORDERS, REMITTANCES OR WEBSITES) ARE EXPRESSLY AND HEREBY REJECTED BY SELLER AND SHALL NOT BE BINDING ON SELLER UNLESS EXPRESSLY ACCEPTED IN WRITING BY SELLER'S AUTHORIZED REPRESENTATIVE. BUYER HEREBY WAIVES ANY RIGHTS TO ASSERT ITS RIGHTS OR REMEDIES UNDER ANY BUYER TERMS AND CONDITIONS IN RELATION TO ANY ORDER. NO "CLICKWRAP", "CLICK THROUGH", "BROWSE-WRAP" OR OTHER TERMS WHICH SELLER MAY BE REQUIRED TO "ACCEPT" TO ACCESS BUYER WEBSITE OR ONLINE PORTALS FOR VENDOR ACCOUNT CREATION, ORDER PROCESSING, INVOICE SUBMISSION ETC. SHALL HAVE ANY FORCE OR EFFECT. THE CONTRACT IS NOT A SALE BY SAMPLE.</p>	<p><b>제 4 조(구매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b></p> <p>개별 주문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주문, 인도된 상품 수령 및/또는 서비스 수령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은 판매자의 결과물 제공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약관이고, 이로써 구매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청한 추가 또는 다른 약관(견적 요청, 상품 등 수령 알림, 구매 주문서, 송금, 웹사이트 등에 관한 구매자 약관 포함)은 판매자가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러한 추가 또는 다른 약관은 판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한 판매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이로써 모든 주문과 관련하여 구매자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판매자가 판매용 계정 생성, 주문 처리, 청구서 제출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 측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포털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수락"하여야 하는 "클릭 랩", "클릭 스루", "브라우저 랩" 또는 기타 조건은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효과도 없습니다. 본 계약은 샘플에 의한 판매(sale by sample)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p>
<p><b>5. Buyer Request to Modify.</b></p> <p>Without limitation to Section 12 (Right of Substitution), no change or modification to a Contract requested by Buyer (including changes to the design, scope, quantity, or the scope or performance of Services) shall be valid unless accepted by 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each of Seller and Buyer.</p>	<p><b>제 5 조(구매자의 변경 요청)</b></p> <p><b>제 12 조(대체할 권리)</b>의 제한에 따르지 않고, 구매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설계, 범위, 수량 또는 서비스의 범위 또는 이행에 대한 변경 포함)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대리인)이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p>
<p><b>6. Price.</b></p> <p>Prices for Deliverables are those stated in the Order or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Seller and Buyer. Prices are exclusive of all taxes and Buyer shall reimburse Seller for any excise, sales, value-added, use or other taxes incident to this transaction for which Seller may be liable or which Seller is required by law to collect. Seller may, by giving notice to the Buyer at any time prior to delivery of the relevant Deliverable, increase prices:</p> <p>6.1. to correct quantities or prices, at any time, due to typographical, clerical, or mathematical errors;  6.2. following expiry of a Quotation;  6.3. other than where an Order fixes prices for a specified period, on an annual basis in line with the percentage increase over the previous twelve (12) month period of an appropriate indexation rate;  6.4. to reflect any increase in costs due to the Buyer requesting any change to a Contract as agreed in writing by Seller; and/or  6.5. to reflect any increase to Seller of any raw material, component part, cost of labor or third party services used to manufacture or supply the Deliverables OR any other increase beyond Seller'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as a result of exchange fluctuations, increases in taxes and duties and/or other governmental charges payable by Seller or due to any changes in any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p>	<p><b>제 6 조(가격)</b></p> <p>결과물의 가격은 주문에 명시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가격으로 합니다. 모든 세금은 가격에서 제외되며, 구매자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거나 법령에 따라 판매자가 징수하여야 하는 모든 소비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사용세 또는 기타 세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결과물을 인도하기 전에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p> <p>6.1. 인쇄상, 업무상, 산술상의 사유로 잘못 산정된 가격 또는 수량을 경정하는 경우  6.2. 견적서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6.3. 주문이 가격을 특정 기간 동안 고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간의 적절한 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年)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형식인 경우  6.4.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대로 구매자의 계약 변경 요청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6.5. 결과물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 구성 부품, 인건비 또는 제 3자 서비스 등 판매자 측의 비용 인상 또는 환율 변동, 세금 및 관세 및/또는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공과금의 증가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제의 변경 등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기타 비용 인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p>

### 7. Invoicing and Payment.

Seller may invoice Buyer at any time after an Order is placed,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writing on an Order. Buyer will pay Seller's invoice in full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invoice without deductions, set-off, withholdings, or otherwise. Time is of the essence for payment of Seller's invoices and no defect or warranty claim in relation to any Deliverable shall limit Buyer's payment obligations hereunder. Late payment by the Buyer will entitle Seller (without liability to Buyer) to:

- 7.1. unless charging of default interest is prohibited under applicable laws, apply to the overdue amount (i) default interest charge of one and one-half percent (1.5%) per month until paid in full, subject to the maximum and/or minimum amount allowed by law (as applicable); and (ii) reasonable costs for the recovery of Buyer's debt, including any amounts to which Seller is entitled under applicable laws. FOR FRANCE ONLY: the late payment interest may not be less than three times the French legal interest rate in force, and the fixed compensation for recovery costs is equal to EUR 40; and/or
- 7.2. terminate the Contract and/or any other Contract it has entered into with Buyer OR refuse to make delivery under the relevant Order or under any other Contract with the Buyer. Selle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nd set-off against any receivables of the Buyer the reasonable costs of re-delivery, storage and all other handling cost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rom.

### 제 7 조(청구서 발행 및 결제)

판매자는 주문에 달리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 주문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청구서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판매자에게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고, 상계, 공제, 원천징수 등을 통한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하자 또는 이에 따른 담보책임 이행 청구는 구매자의 본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청구서상 금액 지급 지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7.1.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금지되지 않는 한, (i)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및/또는 최소 금액의 범위에서 청구서상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및 (ii)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매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서 구매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청구권. (단, 프랑스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프랑스 법정 이자율의 3 배 이상이어야 하며, 추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의 액수는 40 유로로 고정됩니다.)
- 7.2. 해당 계약 및/또는 구매자와 체결한 기타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주문 또는 구매자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배송, 보관 및 기타 모든 취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위 비용청구권으로써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모든 채권과 상계할 권리를 갖습니다.

### 8. Delivery/Delivery Terms.

Delivery dates are estimates only and time is not of the essence. Subject to Section 10 (Title and Risk of Loss), delivery terms are as per Schedule 1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Order.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total or partial failure to deliver or for any delay in delivery or production due to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acts of God, acts or omissions of Buyer, war or civil unrest, priorities, fires, strikes, natural disasters, severe adverse weather conditions, theft or malicious damage, destruction or breakdown/failure of equipment, epidemic or pandemic, delays in transportation, or inability to obtain necessary labor or raw materials. Buyer shall be oblig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nd/or Services when they are delivered or tendered for delivery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In the event of any Buyer Delay relating to delivery:

- 8.1. Buyer shall pay to Seller all reasonable costs of re-delivery, warehousing, restocking or other storage costs, other handling and insurance costs and any other out of pocket expenses incurred arising from such Buyer Delay;
- 8.2. any payment milestone delayed resulting from Buyer Delay will become due and immediately and Sell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to invoice Buyer in respect thereof;
- 8.3. if Buyer has delayed or refused delivery or collection (whether in whole or in part), Seller shall be entitled to invoice Buyer for the full amount due under the relevant Contract;
- 8.4. risk of loss shall immediately transfer to Buyer and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insurance on the Goods; and
- 8.5. any agreed upon time for the performance of the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Order shall be extended automatically for a corresponding period of time and Seller shall not be liable to Buyer under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for any penalty, damage or los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Buyer Delay.

### 제 8 조(인도 및 인도 조건)

인도일자는 예상되는 인도일자이고,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소유권 및 손실 위험)**에 따라 주문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배송 조건은 **[별표 1]**에 따릅니다. 판매자는 천재지변, 구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전쟁 또는 내란, 우선순위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 화재, 파업, 자연재해, 심각한 악천후, 도난 또는 악의적 손상, 장비의 파괴 또는 고장, 전염병 또는 팬데믹, 운송 지연 또는 필요한 노동력 또는 원자재의 확보 불능 등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결과물의 인도 또는 생산이 지체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주문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되었을 때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와 관련하여 구매자 지체가 발생한 경우:

- 8.1. 구매자는 재인도(再引渡), 창고 보관, 재입고 또는 기타 보관 비용, 기타 취급 및 보험 비용 및 그러한 구매자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8.2. 구매자 지체로 인해 지연되는 모든 결제 기한은 즉시 그 만기가 도래하며, 이에 관한 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권리를 갖습니다(이는 판매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8.3. 구매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 또는 수령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관련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대금 전액 상당의 청구서를 발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 8.4. 상품의 멸실에 따른 위험은 즉시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 8.5. 주문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서 판매자의 의무 이행 기한은 해당 구매자 지체의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에 대하여 구매자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위약금,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Instalments.

Seller may, at its discretion, deliver the Deliverables by separate instalments. In such circumstances, Seller will be entitled to invoice the price for each instalment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Price). Delivery of an instalment will not give Buyer the right to cancel other instalments or cancel or terminate the Order.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delay or refuse delivery or collection (whether in whole or in part) of Goods

### 제 9 조(할부 판매)

판매자는 그 재량에 따라 할부의 방식으로 결과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제 6 조(가격)**에 따라 각 할부 인도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할부 인도분의 인도는 구매자에게 다른 할부 인도분에 관한 취소권을 부여하거나, 주문에 대한 취소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p>OR delay or refuse to receive Service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Seller.</p>	<p>구매자는 판매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의 인도·수령 또는 서비스 수령을 임의로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p>
<p><b>10. Title and Risk of Loss.</b></p> <p>Title to Goods shall not pass to Buyer until Seller has received payment in full for the Price for such Goods; and all other sums which are or become due to Seller from Buyer in respect of such Goods. Until such time as title to Goods has passed to Buyer, Buyer shall ensure that Goods are kept separate and distinct from Buyer's products and identified as property of Seller. Until ownership has passed to Buyer, Buyer shall: hold the Goods on a fiduciary basis as Seller's bailee; store the Goods (at no cost to Seller) separately from all other products of Buyer or any third party so they remain readily identifiable as Seller's property; not destroy, deface or obscure any identifying mark or packaging relating to the Goods; maintain the Goods in satisfactory condition; and keep the Goods insured for their full price against all risks to the reasonable satisfaction of Seller. Buyer may resell or use the Goods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but only: if the sale is at full market value; as a sale of Buyer's property on Buyer's own behalf and with Buyer dealing as principal when making the sale; if Buyer includes a retention of title clause in the form of this Section 10 (<b>Title and Risk of Loss</b>) in its sale contract with its customer. Buyer's right to possession, use and resale of the products shall terminate immediately if Sections 13.1, 13.2 and/or 15 become applicable. Until title passes to Buyer, Seller may require Buyer to deliver up the Goods to the Seller and, if the Buyer fails to do so, to enter Buyer's premises or any third party where the Goods are stored and repossess the Goods.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pledge (wholly or partially) or in any way charge any of the Goods which remain property of Seller, but if Buyer does so all moneys owing by the Buyer to the Seller shall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 or remedy of the Seller) forthwith become due and payabl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from the time of delivery of the Deliverables pursuant to Section 8 (<b>Delivery / Delivery Terms</b>), all risk of loss or damage shall be borne by Buyer.</p>	<p><b>제 10 조(소유권 및 위험부담)</b></p> <p>상품의 소유권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전액 및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타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의 제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위 상품이 판매자의 재산으로 식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구매자는 판매자의 수탁자로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고, 상품을 구매자 또는 제 3 자의 다른 모든 제품과 별도로 보관하여 판매자의 재산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품의 식별 마크나 포장물 파기·훼손 또는 은닉하지 않아야 하고, 상품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만족에 이르는 범위에서 모든 위험에 관한 상품 가격 전액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상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매 또는 사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i) 시가로 판매되는 경우, (ii) 구매자 자신을 위하여 구매자의 재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판매 시 당사자로서 거래하는 경우, (iii) 구매자가 고객과의 판매 계약에 <b>제 10 조(소유권 및 위험부담)</b>와 같은 형식의 소유권 유보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구매자의 제품 소유, 사용 및 재판매 권리는 <b>제 13 조 제 1 항</b>, <b>제 13 조 제 2 항</b> 및/또는 <b>제 15 조</b>가 적용되는 경우 즉시 만료됩니다.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을 판매자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점유하는 부지 또는 상품이 보관된 제 3 자 점유 부지에 출입하여 상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매자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일체는 즉시 그 만기가 도래합니다(이는 판매자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b>제 8 조(인도 및 인도 조건)</b>에 따라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결과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위험은 전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p>
<p><b>11. Tooling.</b></p> <p>A tooling charge may be imposed for any special tooling or equipment (collectively, "<b>Tooling</b>") acquired by Seller to manufacture the Deliverables. Selle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all Tooling and Buyer will not acquire any rights,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Tooling, unless stated in the Order.</p>	<p><b>제 11 조(공정)</b></p> <p>판매자가 결과물을 제조하기 위해 취득한 모든 특수 도구 또는 장비(이하 총칭하여 "<b>공정</b>"이라 합니다)에 대해 공정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공정 일체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이며, 구매자는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정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p>
<p><b>12. Rights of Substitution.</b></p> <p>Seller at its option may substitute Deliverables and/or parts or components with other goods or products providing materially the same, equivalent or superior form, fit and functionality as those originally ordered by Buyer. Seller also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Services, provided that such change has no material adverse impact on Buyer's use of or receipt of the benefit of such Service.</p>	<p><b>제 12 조(대체할 권리)</b></p> <p>판매자는 그 선택에 좇아 구매자가 최초에 주문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동등하거나 보다 우수한 형태, 적합성 및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상품 또는 제품으로 결과물 및/또는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그러한 변경이 구매자의 서비스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이익 향유를 현저하게 해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p>
<p><b>13. Cancellation by Seller.</b></p> <p>Unless prohibited by applicable law, Seller may, at its option and discretion and in addition to its other remedies under these Terms or at law, and without liability to Buyer, cancel the Order, refuse or delay delivery of Goods and/or refuse or delay performance of Services, if:</p>	<p><b>제 13 조(판매자에 의한 계약 해제)</b></p> <p>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의한 다른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그 선택과 재량에 따라 주문 취소, 상품의 인도 거절 또는 연기 및/또는 서비스 이행의 거절 또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p>

<p>13.1. Buyer remains in default in any payments or other performance due to Seller under this or any other agreement notwithstanding Seller having provided Buyer with not less than fourteen (14) days' notice to pay such overdue amounts;</p> <p>13.2. Buyer becomes insolvent or a petition in bankruptcy is filed with respect to Buyer (or a similar event takes place which affects the Buyer);</p> <p>13.3. there are causes beyond Seller's reasonable control which make it impossible to assure its timely performance of an Order; or</p> <p>13.4. the cost of provision of the Deliverables has increased so significantly that, in the Seller's reasonable opinion and acting in good faith, it is no longer commercially viable for Seller to continue to supply the Deliverables and perform the Order.</p> <p>Seller shall refund to Buyer any sums paid by Buyer for Deliverables which are the subject of cancellation by Seller under this Section 13 (Cancellation by Seller).</p>	<p>13.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기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p> <p>13.2. 구매자가 파산하거나 구매자와 관련하여 파산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또는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p> <p>13.3.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하여 주문의 적시 이행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p> <p>13.4. 판매자의 합리적인 의견과 선의로 판단할 때, 판매자가 결과물을 계속 공급하고 주문을 이행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결과물 제공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p> <p>판매자는 본 제 13 조(판매자에 의한 계약 해제)에 따라 판매자에 의한 해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물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p>
<p><b>14. Cancellation by Buyer.</b></p> <p>Buyer may cancel the remaining, unfilled portion of the Order only upon written consent of Seller and payment of the full price for that portion of the Order that Seller has substantially completed at time of cancellation plus reasonable cancellation charges which shall include the full profit plus all cost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canceled portion of the Order such as overhead and administrative costs, commitments made by Seller as a consequence of the Order and the cost of all work-in-progress. Cancellation charges shall not exceed the purchase price of the canceled portion of the Order.</p>	<p><b>제 14 조(구매자에 의한 계약 해제)</b></p> <p>구매자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 및 해제 시점에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한 주문의 해당 부분에 대한 전체 가격 및 합리적인 범위의 해제 수수료(전체 수익과 간접비 및 관리 비용, 주문의 결과로 판매자가 약정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비용 기타 모든 작업 비용 등 주문의 해제된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를 지불한 경우에만 주문의 나머지 미이행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제 수수료는 주문에서 해제된 부분의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p>
<p><b>15. Assurance of Performance.</b></p> <p>If Buyer is delinquent in payment at any time, or if in Seller's judgment, Buyer's credit becomes impaired or unsatisfactory, Seller may, in addition to its other remedies, cancel Buyer's credit, stop further performance, and demand cash, security or other adequate assurance of payment satisfactory to it.</p>	<p><b>제 15 조(이행 보증)</b></p> <p>구매자가 언제라도 대금 지급을 연체하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구매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 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른 구제수단과 더불어 구매자에 대한 신용 공여의 취소 또는 추가 이행의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거나, 현금·담보 제공 또는 기타 만족할 만한 것으로서 적절한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b>16. Recommendations.</b></p> <p>Prediction of results, estimations, interpretation or other analysis of data, provision of recommendations or other expression of opinions provided by Seller to Buyer as part of the Services (collectively, "Analysis") shall not be deemed as provision of a determined, predicted or guaranteed outcome. Buyer is required to apply its own judgement and carry out all due diligence as required (including, to validate operational feasibility and impact of any Analysis) prior to making any other decisions relating to its business based on any part of such Analysis. BUYER ASSUMES ALL RESPONSIBILITY FOR ANY DECISION MADE BY BUYER BASED ON THE ANALYSIS AND, SAVE IN RESPECT OF ANY WARRANTY CLAIM UNDER SECTION 17.2, HEREBY WAIVES AND RELEASES SELLER FROM ANY LIABILITY RELATING TO THE ANALYSIS.</p>	<p><b>제 16 조(권장 사항)</b></p> <p>결과 예측, 추정, 해석 또는 기타 데이터 분석, 판매자가 서비스의 일부로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권장 사항 제공 또는 기타 의견 표현(이하 총칭하여 "분석"이라 합니다)은 결정, 예측 또는 보장된 결과의 제공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구매자는 그러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상 관련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자체 판단을 적용하고 필요한 모든 실사(분석의 운영 타당성 및 영향 검증 포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분석에 기반한 일체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이로써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른 보증 청구를 제외한 분석과 관련된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판매자를 면책합니다.</p>
<p><b>17. Limited Warranty.</b></p> <p>Seller warrants as follows:</p> <p>17.1. for Goods, Seller warrants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ollowing original shipment by Seller, and for dry gas seals twelve (12) months from installation or twenty-four (24) months following original shipment by Seller, whichever occurs first that the Goods are free from material defects in material (unless such material was supplied by Buyer or the supplier of such material was suggested or directed by Buyer) or workmanship (unless such workmanship is the result of Services performed by Buyer or by a supplier suggested or directed by Buyer). Goods, parts and/or components (i) consumed in normal operation, (ii) subjected to neglect, abnormal conditions or normal wear and tear, (iii) repaired or maintained other than by Seller, or (iv) involved in any accident are not covered by this warranty.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Seller will repair or, at its option and discretion, replace free of charg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y Goods found by it within such warranty period to be defective in breach of said warranty upon return thereof transportation prepaid by the Buyer to the location specified by Seller. Seller reserves the right to use refurbished Goods, parts and/or components in order to provide a repair or replacement. No returns will be accepted without prior</p>	<p><b>제 17 조(제한된 범위에서의 품질보증)</b></p> <p>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합니다.</p> <p>17.1. 판매자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최초로 배송한 후 12 개월 동안, 드라이 가스 씰의 경우 설치 후 12 개월 또는 판매자가 최초 배송한 후 24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상품에 재료(구매자가 해당 재료를 공급한 경우 및 구매자가 해당 재료의 공급자를 제안하거나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제조 기술(해당 제조 기술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제안하거나 지시한 공급자의 서비스 수행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의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i) 정상 작동 중에 소비되거나, (ii) 방치, 비정상적인 조건 또는 정상적인 마모에 노출되거나, (iii) 판매자가 아닌 제 3 자가 수리 또는 유지·보수하거나, (iv) 일체의 사고와 관련된 상품, 부품 및/또는 구성 요소는 본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해당 보증 기간 내에 해당 보증 조건을 위반하여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구매자가 선불로 운송비를 지불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반환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판매자의 선택과 재량에 따라 교체합니다. 판매자는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하기 위해</p>

written authorization by Seller. UNLESS SELLER EXPRESSLY AGREES OTHERWISE IN WRITING AND EXCEPT FOR GOODS PROVIDED BY SELLER'S AFFILIATES, THIRD PARTY PRODUCTS SUPPLIED BY SELLER SHALL CARRY ONLY THE WARRANTIES (IF ANY) PROVIDED TO BUYER BY THE ORIGINAL MANUFACTURERS, AND SELLER GIVES NO WARRANTY FOR SUCH GOODS AND BUYER HEREBY WAIVES AND RELEASES SELLER FROM ANY FURTHER LIABILITY IN RESPECT OF ANY THIRD PARTY PRODUCTS SUPPLIED BY SELLER. In case of replacement, the Seller may keep the returned part and, in such case ownership shall transfer to the Seller;

리퍼브 상품, 부품 및/또는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계열사가 제공한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자가 공급하는 제 3 자 제품에는 원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보증(단, 그러한 보증이 있는 경우)만이 적용되며, 판매자는 그러한 상품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이로써 판매자가 공급하는 제 3 자 제품과 관련하여 일체의 배상 청구권 포기하고 판매자를 면책합니다. 판매자는 교체 시 반품된 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이전됩니다.

**17.2.** for Services, without limitation to Section 16 (**Recommendations**) above, Seller warrants to Buyer for a period of ninety (90) days following performance or completion of Services by Seller, that the Services are performed in a competent and diligent manner in accordance with any mutually agreed, written specifications.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Seller will re-perform Services found by it to be defective within such warranty period;

**17.2.** 서비스의 경우, 위 **제 16 조(권장 사항)**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서비스 이행 또는 완료 이후 90 일 동안 서비스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요구 조건에 따라 능숙하고 성실한 방식으로 이행되었음을 구매자에게 보증합니다. 위 보증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해당 보증 기간 내에 서비스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서비스를 재차 수행합니다.

**17.3.** warranty repair, replacement, or re-performance shall not extend or renew the applicable warranty period; and

**17.3.** 품질보증 수리, 교체 또는 재수행은 이와 관련되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시키지 않습니다.

**17.4.** SELLER MAKES NO OTHER WARRANTY OR COMMITMENT WITH RESPECT TO ANALYSIS, HEREBY DISCLAIMING,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ANY WARRANTY, TERM OR CONDITION AS TO THE ADEQUACY, SUFFICIENCY OR COMPLETENESS OF ANY DATA, REPORTS, ESTIMATES, ANALYSES, INTERPRETATIONS, MODELING, PREDICTIONS, OPINIONS OR RECOMMENDATIONS PROVIDED TO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ANALYSIS, ALL OF WHICH SHALL BE CONSIDERED ADVISORY ONLY.

**17.4.** 판매자는 분석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보증이나 약속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는 관련 법령, 일체의 품질보증 또는 약관이 허용하는 최대의 한도 내에서 분석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보고서, 추정, 분석, 해석, 모델링, 예측, 의견 또는 권고의 적절성, 충분성 또는 완전성을 부인하며, 상기 사항은 모두 권고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7.5.** The warranties and remedies set forth herein are conditional upon:

**17.5.** 본 약관에 명시된 품질보증 및 구제수단은 조건부입니다.

**17.5.1.** proper storage (as per instructions provided by Seller), fitting, installation, use, operation, maintenance of the Goods, and conformance with any oral or written instructions issued by the Seller and installation manuals (including revisions thereto) provided by Seller;

**17.5.1.** 판매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상품을 적절하게 보관, 장착, 설치, 사용, 작동, 유지·보수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일체의 서면 또는 구두 지침 및 설치 설명서(개정판 포함)의 내용을 준수할 것

**17.5.2.** Buyer's keeping accurate and complete records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during the applicable warranty period and providing Seller access to those records;

**17.5.2.** 해당 보증 기간 동안, 구매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

**17.5.3.** repair, maintenance or modification only as performed by Seller or by third parties authorized by Seller in writing;

**17.5.3.**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제 3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만 수리, 유지·보수 또는 개조할 것

**17.5.4.** Buyer informing Seller of defects within fourteen (14) days following its discovery of such breach of the warranty and returns the Goods to Seller appropriately packaged so as to prevent any damage; and

**17.5.4.** 구매자는 보증 조건 위반을 알게 된 후 14 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결함에 관하여 통지하고, 상품 손상 방지를 위하여 상품을 적절하게 포장한 다음 이를 판매자에게 반환할 것

**17.5.5.** Goods not being kept in storage or immobilised for more than one year.

**17.5.5.** 상품은 1 년 이상 보관되거나 미작동되지 않을 것

FAILURE TO MEET ANY CONDITIONS IN THIS SECTION 17.5 RENDERS THE WARRANTY PROVIDED BY SELLER NULL AND VOID.

본 항(17.5)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판매의 품질보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7.6.**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fect arising from any drawing, design, specification, plan or other information supplied by or on behalf of Buyer.

**17.6.**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공된 도면, 설계, 사양, 계획 또는 기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7.7.** Cost of parts and workmanship will be invoiced at Seller's then current price list if the defect found to be not subject to this warranty, the Goods found not to be defective or if the defect is determined to be due to failure of Buyer or its agents or employees. In addition, Seller reserves the right to charge an evaluation fee calculated at Seller's then-current rates for out-of-warranty repair services and testing carried out on Goods found to be non-defective as well as all shipping costs from the Buyer's facility to Seller's facility.

**17.7.** 결함이 본 품질보증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결함이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품 및 공임 비용은 판매자의 당시 가격표에 따라 청구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에 대한 보증 기간 외 수리 서비스 및 테스트에 대해 판매자의 당시 유효로 계산된 평가 수수료 및 구매자의 시설에서 판매자의 시설까지의 모든 배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7.8.** THE WARRANTIES AND REMEDIES SET OUT IN THIS SECTION 17 (Limited Warranty) CONSTITUTE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IES FOR ALL CLAIM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NY FAILURE OF, OR ANY DEFECT OR NON-COMFORMITY IN, THE DELIVERABLES, AND ARE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TERMS, CONDITIONS, REPRESENTATIONS AND/OR GUARANTEES, EXPRESS OR IMPLIED, WHICH ARE HEREBY EXCLUDED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TERMS AND CONDITIONS

**17.8. 제 17 조(제한된 범위에서의 품질보증)**에 명시된 보증 및 구제수단은 산출물의 고장, 결함 또는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한 배타적 구제수단이며, 다른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 약관 및/또는 의사표시를 대체합니다. 이로써 위 품질보증, 약관 및/또는 의사표시는 최소한 품질보증,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관한 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OF MERCHANTABILITY, SATISFACTORY QUA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18. Liability.**

18.1. NEITHER PARTY EXCLUDES OR RESTRICTS LIABILITY FOR: (I)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NEGLIGENCE; (II) FRAUD OR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OR (III) ANY OTHER LIABILITY THAT CANNOT BE EXCLUDED OR RESTRICTED BY APPLICABLE LAW.

18.2. WITHOUT LIMITATION TO SECTION 17 (Limited Warranty) AND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1, IN NO EVENT SHALL SELLER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CONSEQUENTIAL OR PUNITIVE LOSS OR DAMAGE OR FOR ANY OF THE FOLLOWING (WHETHER DIRECT OR INDIRECT):

- 18.2.1. LOSS OF USE; OR
- 18.2.2. LOSS OF PROFITS; OR
- 18.2.3. LOSS OF REVENUE, LOSS OF PRODUCTION OR LOSS OF BUSINESS; OR
- 18.2.4. LOSS OF DATA AND/OR THE LOSS OF THE USE OF DATA; OR
- 18.2.5. LOSS OF GOODWILL, LOSS OF REPUTATION OR LOSS OF OPPORTUNITY; OR
- 18.2.6. LOSS OF ANTICIPATED SAVINGS OR LOSS OF MARGIN.

IN EACH CASE WHETHER ARISING IN CONTRACT, TOR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NEGLIGENCE), BREACH OF STATUTORY DUTY,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R OTHERWISE, AND WHETHER OR NOT ARISING OUT OF ANY LIABILITY OF THE BUYER TO ANY OTHER PERSON, EVEN IF THE SELLER OR ITS AFFILIATES HAVE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ANY SUCH LOSSES OR DAMAGES.

18.3.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1, IN NO EVENT SHALL SELLER'S TOTAL AGGREGATE LIABILITY WHETHER ARISING IN CONTRACT, TOR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NEGLIGENCE), BREACH OF STATUTORY DUTY,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R OTHERWISE EXCEED THE FOLLOWING:

- 18.3.1. IN RELATION TO ANY CLAIM OR SERIES OF RELATED CLAIMS, AN AMOUNT EQUAL TO THE PURCHASE PRICE OF THE DELIVERABLES IN RESPECT OF WHICH THE CLAIM OR SERIES OF RELATED CLAIMS HAS BEEN BROUGHT WHICH HAVE BEEN DELIVERED BY SELLER TO BUYER; AND
- 18.3.2. NOTWITHSTANDING SECTION 18.3.1, IN RELATION TO ALL CLAIMS ARISING OUT OF AND/OR RELATED TO ANY CONTRACT, A TOTAL AGGREGATE AMOUNT EQUAL TO THE PURCHASE PRICE OF ALL DELIVERABLES WHICH HAVE BEEN DELIVERED BY SELLER TO BUYER UNDER THAT CONTRACT.

18.4. BUYER SHALL PROCURE THAT NONE OF ITS CUSTOMERS TO WHOM IT SUPPLIES ANY DELIVERABLES SHALL BRING ANY CLAIMS AGAINST ANY INDEMNITEES (AS DEFINED IN SECTION 19 (INDEMNITY) BELOW).

18.5.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1, NO CLAIM, SUIT OR ACTION SHALL BE BROUGHT AGAINST SELLER MORE THAN ONE (1) YEAR AFTER THE RELATED CAUSE OF ACTION HAS OCCURRED.

**제 18 조(책임)**

18.1. 어느 당사자도 다음의 사유로 발생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I)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 사기 또는 위증·허위 진술, 또는 (III)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

18.2. 제 17 조(제한된 범위에서의 품질보증)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이는 손해 또는 손실의 직·간접 여부를 불문합니다).

- 18.2.1. 사용 손실
- 18.2.2. 이익 손실
- 18.2.3. 매출·생산·사업상 손실
- 18.2.4. 데이터 손실 및/또는 데이터 사용 손실
- 18.2.5. 영업권·평판상·기회 손실
- 18.2.6. 예상 절감액·이윤 손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법령상 의무 위반, 무과실책임, 제조물책임 또는 여하의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구매자의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본 조항의 내용은 판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그러한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8.3.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판매자의 책임 누적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법령상 의무 위반, 무과실책임, 제조물책임 또는 여하의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8.3.1. 청구 또는 일련의 관련 청구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것으로서 해당 청구 또는 일련의 관련 청구의 원인이 된 결과물의 구매 가격 상당의 총 누적 금액 및
- 18.3.2. 위 제 18 조 제 3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인하여 및/또는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결과물 일체의 구매 가격 상당의 총 누적 금액.

18.4. 구매자는 자신이 결과물을 공급하는 고객 중 누구도 아래 제 19 조(면책)에 정의된 피해상자를 상대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8.5.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관련 청구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에는 판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소 제기 또는 청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9. Indemnity.**

Save as expressly agreed otherwise in writing by Buyer and Seller, and save if and to the extent no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Buyer hereby indemnifies, defends, and holds harmless Seller, its Affiliates, its and it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contractors, distributors, successors, and assigns (each an "Indemnitee," and collectively, the "Indemnitees"), from and against any damages, losses, claims, suits, and other liabilitie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a) personal injury to, or death of, an Indemnitee'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b) damage to tangible property belonging to an Indemnitee; (c) claims of infringement, misappropriation, or violation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or arising from modification of any Deliverables by or on behalf of Buyer; (d) claims of infringement, misappropriation, or violation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the use by an Indemnitee of any documentation, designs, drawings, manuals or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or on behalf of Buyer to an Indemnitee; (e) Buyer's violation of applicable law; (f) materials supplied by or on behalf of Buyer to

**제 19 조(면책)**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손실, 청구, 소송 및 기타 책임으로부터 판매자, 그 계열사, 판매자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수급인, 유통 담당자, 승계인 및 양수인(이하 각 "피배상자"라 하고, 총칭하여 "피배상자들"이라 합니다)을 면책하며, 이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 (a) 피배상자의 피용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의 사망 또는 상해
- (b) 피배상자 소유 유형(有形) 재산의 손상
- (c)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결과물의 변경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오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p>an Indemnitee to manufacture the Goods; (g) any part of the Goods obtained by an Indemnitee from a supplier suggested or directed by Buyer; (h) any part of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carried out by a supplier suggested or directed by Buyer; (i) the negligence, or wrongful acts or omissions, of Buyer or such supplier; or (j) any breach by Buyer of Section 18.4.</p>	<p>(d)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피배상자에게 제공된 문서, 설계, 도면, 매뉴얼 또는 기타 정보의 피배상자에 의한 사용과 관련된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오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p> <p>(e) 구매자의 관련 법령 위반</p> <p>(f)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상품 제조를 목적으로 피배상자에게 공급된 재료</p> <p>(g) 구매자가 제안 또는 지시한 공급업체로부터 피배상자가 취득한 것으로서 상품의 구성 부분</p> <p>(h) 구매자가 제안 또는 지시한 공급업체가 수행한 상품 제조의 일부</p> <p>(i) 구매자 또는 그러한 공급업체의 과실에 의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p> <p>(j) 구매자의 제 18 조 제 4 항 위반.</p>
---	--

<p><b>20. Production Performance Estimates.</b></p> <p>Any production or performance standards furnished by Buyer may depend on several variable factors, and as such no results or estimates are guaranteed.</p>	<p><b>제 20 조(생산 성능 추정치)</b></p> <p>구매자가 제공하는 모든 생산 또는 성능 기준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결과 또는 추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p>
---	---

<p><b>21. Compliance with Laws and Warnings.</b></p> <p>In those instances in which Seller provides health or safety information, warning statements, and/or instru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stallation, use or maintenance, including preventative maintenance, of its Goods (and Seller assumes no obligation to do so), Buyer agrees to comply with all such information, warnings and instructions. Buyer further agrees to communicate all such information, warnings and instructions to its employees, agents and subcontractors, and to subsequent buyers and users of those Goods. Buyer wi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Buyer will indemnify and hold Indemnitees harmless for Buyer's breach of this Section 21 (<b>Compliance with Laws and Warnings</b>).</p>	<p><b>제 21 조(법령 및 경고의 준수)</b></p> <p>판매자가 상품의 설치, 사용 또는 유지·보수(예방적 유지보수 포함)와 관련하여 건강 또는 안전 정보, 경고문 및/또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단, 판매자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음), 구매자는 그러한 모든 정보, 경고 및 지침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또한 그러한 모든 정보, 경고 및 지침을 자신의 피용자, 대리인 및 하청 업체와 해당 상품의 후속 구매자 및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구매자는 본 제 21 조(<b>법령 및 경고의 준수</b>)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고 피배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p>
--	--

<p><b>22. Repairs (Job Lapping).</b></p> <p>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18.1 and this Section 22 Seller shall have no liability whatsoever for spoilage or damage to any Goods, parts or stock furnished for lapping or repair. In addition to the specific exclusions in Section 18 (<b>Liability</b>) above, Seller's liability in relation to Goods, part or stock furnished for lapping or repair shall be limited to cases of its negligence, and then only to the extent of cancellation of its charges for lapping or repairing the spoiled or damaged Goods, parts or stock.</p>	<p><b>제 22 조(수리/랩핑 작업)</b></p> <p><b>제 18 조 제 1 항 및 본 제 22 조</b>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랩핑 또는 수리를 위하여 제공된 상품, 부품 또는 재고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b>제 18 조(책임)</b>에 특정된 책임의 예외 사유에 더하여, 랩핑 또는 수리를 위해 제공된 상품, 부품 또는 재고와 관련한 판매자의 책임은 판매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손상 또는 훼손된 상품, 부품 또는 재고로 인한 랩핑 또는 수리 비용 청구의 취소 범위로 제한됩니다.</p>
--	--

<p><b>23. Confidentiality.</b></p> <p>All non-public,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cluding any technic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and ideas which Seller has supplied or shall supply Buyer, whether disclosed orally or disclosed or accessed in written, electronic, or other form or media, and whether or not marked, designated, or otherwise identified as "confidential", but exclud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or properly in Buyer's possession in tangible form before receiving such information from Seller ("<b>Confidential Information</b>") is proprietary to Seller and is disclosed to Buyer in confidence for the limited purpose of assisting Buyer in the evaluation or use of the Deliverables. Buyer shall not without Seller's prior written consent, disclose or make availabl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or use Confidential Information except for such limited purpose. Buyer shall keep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ecure so as to prevent its unauthorised disclosure or access.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returned to Seller on demand, and, in any event, when no longer needed by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Deliverables. In addition to Seller's other remedies, Buyer agrees that any benefit or property derived by Buyer from any unauthorized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y of Seller. Buyer represents and warrants to Seller that Buyer has the necessary licenses in and is under no confidentiality obligations that prevent the Buyer from disclosing drawings and other dat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mensions, specifications, measurements etc.) pertaining to products subject to Services for the purpose of repair and reverse engineering by Seller as the case may be. Bu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damages alone would not be an adequate remedy for breach of this Section 23 by Buyer. Accordingly, Seller will be entitled, without having to prove special damages, to equitable relief (including</p>	<p><b>제 23 조(기밀 유지)</b></p> <p>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두로 공개하였거나 서면, 전자 또는 기타 형식이나 매체로 공개 또는 액세스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밀"로 표시·지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기밀"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기술 및 상업 정보 및 아이디어를 포함한 모든 비공개, 기밀 또는 독점 정보(단, 판매자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공개된 영역에 있었거나 구매자가 유형(有形)의 형식으로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는 제외)(이하 "<b>기밀 정보</b>"라 합니다)는 판매자의 독점 정보이며 구매자가 결과물을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기밀로 공개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그러한 제한된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는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밀 정보는 판매자의 요청 시, 그리고 구매자가 결과물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다른 구제수단과 더불어, 구매자는 기밀 정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구매자가 얻은 이익이나 재산이 판매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판매자가 수리 및 역설계를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 제품과 관련되는 도면 및 기타 데이터(치수, 사양 측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요구하는</p>
--	---



<p>injunction and specific performance) and to any remedies available to a trade secret holder for any breach or threatened breach of Section 23 by Buyer.</p>	<p>경우에 구매자에게는 서비스 대상 제품 관련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밀 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을 판매자에게 표시하고 보증합니다. 구매자는 손해배상만으로는 구매자의 본 제 23 조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특별손해에 관한 입증 없이도 상당한 구제(금지 명령 및 강제이행 포함) 등 구매자의 제 23 조 위반 또는 그 위협에 대해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 일체를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p>
<p><b>24. Shortages.</b> Claims for shortages must be made within five (5) days after receipt of Goods. All other claims must be made within thirty (30) days of shipping date (except for warranty claims, which are governed by Section 17 (Limited Warranty) above).</p>	<p><b>제 24 조(수량 부족)</b> 수량부족으로 인한 청구는 상품 수령 후 5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모든 청구는 배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단, 제 17 조(제한된 범위에서의 품질보증)에 의한 품질보증 관련 청구는 제외합니다).</p>
<p><b>25. Patents.</b> Buyer will protect and indemnify Indemnitees against all claims arising out of patents, designs, trade secrets, copyrights, or trade names with respect to Goods manufactured wholly or partially to Buyer's designs or specifications, including any costs, expenses, loss, attorneys' fees, settlement payments, or damages.</p>	<p><b>제 25 조(특허)</b> 구매자는 구매자의 설계 또는 사양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특허, 디자인, 영업 비밀, 저작권 또는 상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피배상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그 면책 범위에는 제반 비용, 경비, 손실, 변호사 비용, 합의금 또는 손해가 포함됩니다.</p>
<p><b>26. CERTIFICATES OF CONFORMANCE.</b>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BY SELLER IN WRITING, WHERE SELLER PROVIDES BUYER WITH CERTIFICATE OF CONFORMANCE (A "COC") CERTIFYING THAT ANY GOODS SUPPLIED CONFORM TO STATED REGULATIONS, GUIDELINES OR STANDARDS INCLUDING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QUIRED STANDARDS"), SUCH COC IS PROVIDED BY SELLER TO CERTIFY ONLY THAT THE GOODS SUPPLIED COMPRISE MATERIALS WHICH MEET SUCH REQUIRED STANDARDS. BU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NO FURTHER REPRESENTATION, WARRANTY OR OTHER STATEMENT IS MADE IN RELATION TO THE GOODS TO WHICH A COC RELATES, INCLUDING IN RESPECT OF THE TESTING, ASSEMBLY LINE PROCESS OR ASSEMBLY ENVIRONMENT FOR THE GOODS (COLLECTIVELY, "EXCLUDED CONFORMITY STATEMENTS") AND BUYER HEREBY WAIVES AND RELEASES SELLER FROM ANY LIABILITY, CLAIMS OR OTHERWISE RELATING TO ANY EXCLUDED CONFORMITY STATEMENTS.</p>	<p><b>제 26 조(적합성 증명서)</b> 판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공급한 모든 상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한 명시된 규정, 지침 또는 기준(이하 "필수 기준"이라 합니다)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증명서(이하 "COC"라 합니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COC 는 공급된 상품이 그러한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판매자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구매자는 COC 의 관련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테스트, 조립 라인 공정 또는 조립 환경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 보증 또는 기타 언급(이하 총칭하여 "제외된 적합성 진술"이라 합니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로써 구매자는 제외된 적합성 진술과 관련된 모든 책임, 청구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판매자를 면책합니다.</p>
<p><b>27. Amendments and Survival.</b> No addition to, modification or revision of these Terms contained herein shall be valid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Seller. Sections 3 to 10 (inclusive), Sections 12, 13, 17 to 19 (inclusive), 27, 31 and 32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se Terms.</p>	<p><b>제 27 조(본 약관의 개정 및 존속)</b> 본 약관을 구성하는 조항의 추가, 수정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서면에 판매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내지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7 조 내지 제 19 조, 제 27 조, 제 31 조 및 제 32 조는 본 약관의 효력기간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p>
<p><b>28.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b> These Terms, each Contract and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or state listed in Schedule 1 to these Terms by reference to the country in which Seller is located. Seller and Buyer irrevocably agrees that the courts of listed in Schedule 1 to these Terms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any Contract.</p>	<p><b>제 28 조(준거법 및 관할)</b> 본 약관, 각 계약 및 그로부터 또는 그 대상·목적 또는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또는 청구(계약 외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판매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본 약관의 [별표 1]에 열거된 국가 또는 주(州)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본 약관의 [별표 1]에 열거된 법원이 본 계약 또는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청구를 해결할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합의하고, 어느 당사자도 위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p>
<p><b>29. Code of Conduct.</b> Seller is committed to conducting its business ethically and lawfully. To that end the Seller, through its ultimate parent company, Smiths Group plc, maintains a code of business ethics ("Code of Conduct") and mechanisms for reporting unethical or unlawful conduct. The Seller expects that the Buyer will also conduct its business ethically and lawfully. If the Buyer has</p>	<p><b>제 29 조(행동 강령)</b> 판매자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최상위 모회사인 Smiths Group plc 를 통해 비즈니스 윤리 강령(이하 "행동 강령"이라 합니다)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는</p>

cause to believe that the Seller or any employee or agent of the Seller has behaved unethically or unlawfully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Buyer is encouraged to report such behavior to the Seller or to Smiths Group plc. Smiths Group plc's Code of Conduct and mechanisms for making such reports are available on [www.smiths.com](http://www.smiths.com).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본 약관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행동을 판매자 또는 Smiths Group plc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Smiths Group의 행동 강령 및 그러한 신고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http://www.smith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 Export Regulations and Destination Control Statement.

If the Deliverables, commodities, technologies or software sold or supplied hereunder are exported from the country where Seller resides, they may only be done so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ch jurisdiction, and any diversion contrary to such laws is prohibited. Buyer will not export any technical data, or commodities that are controlled by government regulations in violation thereof, and agrees to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Indemnitees from and against any claim, loss, liability, expense or damage (including liens or legal fees) incurred by Seller with respect to any of Buyer's export or re-export activities contrary to applicable export and import controls.

### 제 30 조(수출 규제 및 수출 목적지 통제에 관한 진술)

본 계약에 따라 판매 또는 공급되는 결과물, 상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판매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경우 해당 관할권의 법령 및 규제에 따라서는 수출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우회 수출은 금지됩니다. 구매자는 정부 규제에 의하여 통제되는 일체의 기술 데이터 또는 상품을 그에 위반하여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적용 가능한 수출입 통제에 위반하는 구매자의 수출 또는 재수출 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응하여야 하는 일체의 청구 및 판매자에게 발생한 손실, 책임, 비용 또는 손해(유치권 또는 법률 수수료 포함)에 대하여 피배상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피배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31. Intellectual Property.

Notwithstanding delivery of and the passing of title in any Deliverables, nothing in these Terms shall have the effect of granting or transferring to, or vesting in, Buye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 to any Deliverables. As between Seller and Buyer, Seller retains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lation to the Deliverables

### 제 31 조(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구매자에게 부여하거나 이전하거나 구매자에게 귀속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서, 판매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2. Waiver.

A delay in exercising or failure to exercise a right or remedy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ese Terms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or prevent or restrict future exercise of, that or any other right or remedy, nor will the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 right or remedy prevent or restrict the further exercise of that or any other right or remedy. A waiver of any right, remedy, breach or default will only be valid if i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giving it and only in the circumstances an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given and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other right, remedy, breach or default.

### 제 32 조(약관상 권리의 포기)

본 약관에 따른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행사 지연 또는 불행사는 해당 권리 또는 구제수단 또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향후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일회적 또는 부분적인 행사는 해당 권리 또는 구제수단 또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추가적인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 및 계약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서면에 포기·면책하는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이는 포기 또는 면책이 이루어진 상황 및 목적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 또는 다른 계약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33. Severability.

If any term of the Contract (including any exclusion from, or limitation of, liability set out in Section 18) is found by any court or body or authority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be illegal, unlawful, void or unenforceable, such term will be deemed to be severed from the Contract and this will not affect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which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 제 33 조(약관의 분리 가능성)

(제 18 조에 명시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포함하여)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불법,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4. General.

Buyer may not assign, novate or transfer all or part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Or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Seller. Seller is entitled to assign, novate or otherwise transfer any rights and/or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to any of its Affiliates or to a third party transferring or acquiring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whole of a business to which a Contract relates. A person who is not a party to this Contract shall have no right to enforce any of its terms. These Terms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Buyer and Seller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Order, and supersede all prior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representations or agreements in relations thereto.

### 제 34 조(일반 사항)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문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갱신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상 권리 및/또는 의무를 그 계열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사업의 (사실상) 전부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제 3자에게 양도, 갱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집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주문의 대상·목적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구성하며, 이에 관한 모든 사전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통, 진술 또는 합의를 대체합니다.

END OF TRANSLATION

[별표 1] 준거법 및 전속적 관할법원

판매자의 소재 국가	INCOTERMS 2020	준거법	전속적 관할법원
호주	FCA	빅토리아 주법	빅토리아 주 법원
아르헨티나	FCA	아르헨티나 법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소재 국립상사법원(National Commercial Courts)
벨기에	FCA	벨기에 법	벨기에 법원
브라질	FCA	브라질 법	상파울루 주 상파울루 시 소재 법원
캐나다	FCA	온타리오 주법 (및 이에 적용되는 캐나다 연방법)	온타리오 주 법원
칠레	FCA	칠레 법	산티아고 시 소재 법원
중국	FCA	중화인민공화국 법	톈진 시 법원
콜롬비아	FCA	콜롬비아 법	보고타 시 소재 법원
체코	EXW	체코 공화국법	올로모우츠 지방법원
덴마크	EXW	스웨덴 법	스톡홀름 지역 내 스웨덴 법원의 관할권
프랑스	EXW	프랑스 법	파리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핀란드	EXW	핀란드 법	헬싱키 지방법원
인도	FCA	인도 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의 중재규칙에 의함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i.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존재 여부, 효력 또는 만료 여하에 관한 다툼 포함)은 현재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이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최종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며, 해당 규칙은 이 조항에 인용되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매자가 지정한 1인, 구매자가 지정한 1인, SIAC 의장이 지정한 1인 등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 ii. 또한, 분쟁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한 청구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예정금 또는 미결제금과 관련되고 판매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2010년 SIAC 중재규칙 제 5조에 따른 신속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iii. 1996년 인도 중재조정법(Indian Arbitration & Conciliation Act) 제 1부(제 9조 제외)의 규정은 중재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중재 전 또는 중재 진행 중 관할법원에 임시구제(가구제)를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도네시아	FCA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의 중재규칙에 의함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a) 본 약관에 따라, 그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존재 여부, 효력, 만료 여하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다툼 포함)은 현재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이라 합니다)의 중재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해당 규칙은 이 조항에 인용되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판정부는 고객이 지정한 1인, 회사가 지정한 1인, SIAC 의장이 지정한 1인 등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

판매자의 소재 국가	INCOTERMS 2020	준거법	전속적 관할법원
			<p>(b) 또한, 분쟁이 회사가 고객에게 발행한 청구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예정금 또는 미결제금과 관련되고 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2010 년 SIAC 중재규칙 제 5 조에 따른 신속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p> <p>(c)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사안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p> <p>(d) 중재규칙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인도네시아 또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e)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 또는 그에 포함된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 30 호(1999 년) 제 60 조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판정 또는 그에 포함된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p> <p>(f) 각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 48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재가 특정 기간 내에 완료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p>
아일랜드	EXW 또는 FCA	아일랜드 법	아일랜드 법원
이스라엘	EXW	체코 공화국법	올로모우츠 지방법원
이탈리아	FCA	이탈리아 법	밀라노 소재 법원
일본	FCA	일본 법	도쿄 지방재판소
멕시코	FCA	멕시코 법	멕시코 시티 소재 법원
네덜란드	FCA	네덜란드 법	해당 관할권에 위치한 법원의 관할권
뉴질랜드	FCA	뉴질랜드 법	뉴질랜드 법원
노르웨이	EXW	스웨덴 법	스톡홀름 지역 내 스웨덴 법원의 관할권
페루	FCA	페루 법	리마 시 소재 법원
사우디아라비아	FCA	사우디아라비아 법	리야드 소재 법원
싱가포르	FCA	싱가포르 법	싱가포르 법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FCA	남아프리카 공화국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FCA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법원
스페인	FCA	스페인 법	마드리드 소재 법원
스웨덴	EXW	스웨덴 법	스톡홀름 지역 내 스웨덴 법원의 관할권
대만	FCA	중화민국(대만) 법	중화민국(대만) 법원
태국	FCA	태국 법	<p>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의 중재규칙에 의함</p> <p>당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p> <p>a)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존재 여부, 효력 또는 만료 여하에 관한 다툼 포함)은 현재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이하 "SIAC 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해당 규칙은 이 조항에 인용되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매자가 지정한 1 인, 구매자가 지정한 1 인, SIAC 의장이 지정한 1 인 등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p>

판매자의 소재 국가	INCOTERMS 2020	준거법	전속적 관할법원
			b) 또한, 분쟁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한 청구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예정금 또는 미결제금과 관련되고 판매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2010 년 SIAC 중재규칙 제 5 조에 따른 신속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터키)	FCA	튀르키예(터키) 법	이스탄불 소재 법원
아랍에미리트(UAE)	FCA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
영국	EXW	잉글랜드 법	잉글랜드 법원
미국 / 푸에르토리코	FCA	델라웨어 주법	델라웨어 주 법원
베네수엘라	FCA	베네수엘라 법	<p>만일 구매자가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청구, 다툼 및/또는 이견은 다툼이 발생한 일자에 유효한 기업조정중재센터("CEDCA")의 중재규칙에 규정된 중재 절차, 조건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기관중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재는 CEDCA 의 중재인 명부에 등재된 3 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 중 2 인은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합니다.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될 제 3 의 중재인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CEDCA 의 중재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CEDCA 의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법률 중재인이어야 하며, 항상 본 계약의 조건과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상사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항소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 상사중재법 제 43 조에 의한 '무효 항소(nullity appeal)'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추가 항소 또는 구제수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재는 CEDCA 의 중재센터에서 수행되며,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이 중재 합의의 결과로, 각 당사자는 현지 또는 국외의 일반 법원에 자신의 청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즉,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 회부는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일반 관할권을 배제하게 됩니다.</p> <p>만일 구매자가 베네수엘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상기 규칙에 따라 지정된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재는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며 영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p>
아제르바이잔	FCA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법원(바쿠)
이집트	FCA	이집트	이집트 법원(카이로)
Greece	FCA	Greece	그리스 법원(아테네)
헝가리	FCA	헝가리	헝가리 법원(부다페스트)
카자흐스탄	FCA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법원(알마티)
말레이시아	FCA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원
폴란드	FCA	폴란드	폴란드 법원(바르샤바)
슬로바키아	FCA	Slovakia	슬로바키아 법원(브라티슬라바)